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선거시행세칙

신설 2017.09.29.
개정 2018.04.03.
개정 2018.10.04.
개정 2019.09.10.
개정 2021.11.27.
개정 2022.10.07.
개정 2023.07.12.
개정 2025.10.01.

제1장 총칙 -----	제1조~제3조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4조~제5조
제3장 선거유관기관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6조~제27조
제2절 선거운동본부 -----	제28조~제35조
제4장 선거	
제1절 선거 일정 결정 및 선거 공고 -----	제36조~제37조
제2절 추천 및 후보등록 -----	제38조~제45조
제3절 선거운동 -----	제46조~제60조
제4절 징계 -----	제61조~제66조
제5절 이의제기 -----	제67조~제68조
제6절 투표 -----	제69조~제87조
제7절 투표 성립 -----	제88조
제8절 개표 -----	제89조~제99조
제9절 당선 -----	제100조~제101조
제10절 재투표, 결선투표 및 보궐선거 -----	제102조~제104조
제11절 선거 정리 사업 -----	제105조
제5장 선거시행규칙 -----	제106조~제107조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선거시행세칙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75조에 의거,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전대 학생회를 발전적으로 평가하고 계승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 ③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전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학생회의 민주성을 확립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3조 【회원의 책임】

- ① 모든 회원은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② 공과대학 학생회의 의결기구·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는 선거 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 【선거권】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의 선거권은 공과대학 학생회의 회원에게 있다.

제5조 【피선거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조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때, ‘조’는 학생회장 후보 1인과 부학생회장 후보 1인으로 구성된다.

1. 공과대학 학생회장 후보가 등록 마감일 기준 4개 학기 이상을 공과대학에서 등록하였으며, 공과대학 학생회의 회원인 조
2.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후보가 등록 마감일 기준 2개 학기 이상을 공과대학에서 등록하였으며, 공과대학 학생회의 회원인 조
3. 공과대학 학생회원 2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조. 단, 후보 간 중복 추천은 가능하다.
4. 공과대학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반하는 활동 목적을 갖지 아니한 조
5. 공과대학 학생회장 후보와 공과대학 부학생회장 후보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4조제5항에 의거하여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 조
6. 본 세칙 제43조의 겸직 금지 조항을 만족한 조

제3장 선거유관기관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 【명칭】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공식 명칭으로 한다.
- ② 어느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인지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명칭 앞에 '제00대'를, '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보궐' 등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목적】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모든 업무의 결정권과 집행권을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이다.

제8조 【지위】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로서,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가 구성을 완료한 시점부터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 관련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해소하는 시점까지 존속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및 유관사업에 대한 유일한 관할권을 가지며,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활동한다.

제9조 【직무】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집행
 2.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대한 홍보
 3.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의 민주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4.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
 5.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관련 취재·보도에 관한 학내 각 언론 기관과의 협의
 6. 공과대학 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을 보완
 7. 공과대학 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8. 공과대학 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에 따른 각 선거운동본부 감시
 9. 공과대학 학생회칙·선거시행세칙·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규칙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조치
 10.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협의
 11. 그 밖의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과대학 학생회칙과 세칙·규칙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의 관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 【구성】

-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책임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60조에 의해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 위원회에 있다.
- ②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 14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의 구성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60조를 따른다.
- ③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 ④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의 대표는 선거관리위원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

- 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 한 명을 둔다.
- ②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 호선하며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가 승인한다.
- ③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제12조 【부위원장】

- ①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위원장 한 명을 둔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선거관리위원 중 호선하며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가 승인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의무】

- ① 선거관리위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선거관리위원은 해당 선거의 피선거권이 없으며, 선거운동, 선거운동본부 가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선거관리위원이 해임·탄핵되거나 사임한 이후에도 같다.

제14조 【위원의 해임】

- ① 선거관리위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될 수 있다.
 1.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공과대학 학생회칙·세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3.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본부에 가입한 경우
 4. 공과대학 학생회의 회원이 아닌 경우
- ② 해임안은 선거관리위원 또는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에 의해서만 발의될 수 있다.
- ③ 해임안이 발의되었을 시 그 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권한이 정지된다.
- ④ 선거관리위원의 해임 권한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있으며, 공과대학 학생회 운

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거관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장·부위원장의 탄핵】

- ①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이 제14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의해 탄핵될 수 있다.
- ② 탄핵안은 재적 위원 1/5 이상의 연서 또는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요구에 의해서만 발의될 수 있다.
- ③ 위원장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시 그 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 이때, 위원장 권한대행을 임시 의장으로 호선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한다.
- ④ 부위원장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시 그 의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부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
- ⑤ 탄핵은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피심판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한다.
- ⑥ 위원장 혹은 부위원장이 탄핵된 경우 선거관리위원의 직 또한 상실한다.

제16조 【권한대행】

- ①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선거관리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② 부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 중 부위원장 권한대행을 호선할 수 있다.
- ③ 위원장·부위원장 권한대행의 지위는 위원장·부위원장이 궐위된 순간부터 새 위원장·부위원장이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받는 시점까지 존속된다.

제17조 【위원의 사임·추가임명】

- ① 선거관리위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사임할 수 없다.
- ② 선거관리위원의 사임 요구서는 사임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임 요구서의 수리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이 사임할 때 또는 해임·탄핵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을 추가 임명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위원의 추가임명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즉시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의 사임, 해임·탄핵 또는 추가임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변경 사항이 생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부위원장이 사임할 때 또는 해임·탄핵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장·부위원장을 호선해야 한다.

제18조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는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최고의 사결정기구이다.

제19조 【전체회의의 소집】

①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
2. 선거관리위원 재적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
3.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이의제기에 따른 소집요구
4.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공청회 개최 요청에 따른 소집요구

② 제1항제2호의 소집요구가 있었음에도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한 1/3 이상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위원 중 1인을 임시 의장으로 호선할 수 있다.

③ 회의 소집이 결정되면 위원장은 회의 소집 사실 및 일시를 각 위원에게 지체 없이 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불가피한 경우 온라인 전체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온라인 전체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준하여 소집·진행·표결한다.

제20조 【의결요건】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표결방법】

①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의 표결은 기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라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는 경우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때 또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때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제22조 【출석요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 후보자
2.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3.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사유와 관련된 자

제22조의2 【자료요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선거운동본부에 요구할 수 있다.

1. 게시물·유인물의 원본 파일
2. 유인물·선거운동본부복·선거물품의 거래명세서 혹은 그 밖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사유와 관련된 자료

② 제1항의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제23조 【회의 결과 공고】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의 결과지를 작성하여 폐회 후 2일 이내에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의 녹음을 실시하여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그 녹음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전체회의의 경우, 제2항의 녹음본을 회의에 사용된 메신저의 대화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4조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

- ①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는 선거를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협의체로서, 선거운동본부의 이견 조율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제청 기능을 수행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는 선거관리위원장, 부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선거운동본부장으로 구성되며,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는 다음 호의 사항을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1. 공과대학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 선거시행세칙에 부수된 규칙이 규정하지 않는 사항
 - 2.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모든 사항
 - 3.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청회 개최 요청
- ④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결정으로 제3항제3호의 공청회 개최가 요청될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공청회 개최 여부를 논의한다.
- ⑤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는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연석회의는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에 준하여 소집·진행한다.

제25조 【의결】

- ①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의결은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충분한 토론에도 좁힐 수 없는 결정적인 견해 차이가 있어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절충안을 제안하거나 표결에 부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의결사항은 회의 종료 직후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 단, 사안에 따라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 내에서 특정 결정·합의사항의 적용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의결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사항의 경중을 파악하여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 또는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단,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 외에서 이루어진 결정·합의사항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회의 결과 공고】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결과지를 작성하여 폐회 후 2일 이내에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녹음을 실시하여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그 녹음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24조제5항에 따른 온라인 연석회의의 경우, 제2항의 녹음본을 회의에 사용된 메신저의 대화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 【선거관리위원회실】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간인 선거관리위원회실을 배정해야 한다. 단, 적절한 공간이 없을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실을 사용한다.

제2절 선거운동본부

제28조 【목적】

선거운동본부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된 조의 선거운동을 통해 해당 조의 당선을 도모하고, 각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정책개발 등을 통해 회원의 선거와 관련된 의사 형성에 도움을 주는 회원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제29조 【구성】

- ① 선거운동본부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구성된다.
- ② 선거운동본부장 및 본부원은 공과대학 학생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 ③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은 선거가 예정된 학기의 개강일 60일 전부터 가능하다.

제30조 【선거운동본부 사무실】

-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학내 1개의 공간을 사무실로 둘 수 있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 등록 시 사무실의 위치를 신고한다.
- ③ 선거운동본부가 등록 마감 시한까지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적당한 장소를 섭외해 해당하는 선거운동본부에게 대여한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에 공간 확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학부/과/전공/반 학생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항에 의한 공간 확보를 요청한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31조 【선거운동본부원의 등록】

-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원 등록은 후보 등록 신청과 함께 등록하며, 그 이후부터는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만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변동 사항은 매일 21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인터넷 공간에 제출하며, 보고한 선거운동본부원 변동은 익일부터 유효하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줄 수 있다.
- ④ 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 ⑤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줄 수 있다. 단, 선거운동본부원이 두 개의 선거운동본부에 이중으로 등록되었을 때는 어떤 선거운동본부의 잘못인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⑥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단,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의 변심에 의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선거운동본부장】

- ① 선거운동본부장은 해당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고, 선거 과정 전반에서 후보자를 보좌하며, 후보자를 대신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를 표명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장은 학생회장·부학생회장 후보가 임명한다.
- ③ 학생회장·부학생회장 후보는 선거운동본부장을 교체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서면에는 신임 선거운동본부장의 이름, 소속 학부/과/전공/반 및 학번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34조제1항제5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심사 결과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에 결함이 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줄 수 있다.

제33조 【업무】

- ① 선거운동본부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 투표관리요원을 파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를 보조한다.
- ③ 선거운동본부는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을 파견하여 투·개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4조 【의무】

- ① 선거운동본부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는 공과대학 학생회칙 중 선거 관련 규정, 선거시행세칙 및 선거시행세칙에 부수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결정·합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선거운동본부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발전적인 정책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선거운동본부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5조 【공동선거운동본부】

- ① 공동선거운동본부는 다른 선거운동본부 혹은 이에 준하는 단체와 의도적으로 선거운동본부명, 슬로건, 로고 등을 동일하게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 ② 공동선거운동본부의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 ③ 후보 등록을 신청한 선거운동본부가 공과대학 내 학부/과/전공/반, 타 단과대학, 혹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와 공동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

동본부의 후보 등록을 보류 및 선거운동본부명, 슬로건, 로고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후보 등록이 완료된 선거운동본부가 공과대학 내 학부/과/전공/반, 타 단과대학, 혹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와 공동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줄 수 있다.

제4장 선거

제1절 선거 일정 결정 및 선거 공고

제36조 【선거 일정】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시기는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72조를 따른다.
- ②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은 추천 및 등록 기간, 선거운동 기간, 투표일, 개표일로 구성된다.
- ③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추천 및 등록 기간을 2일 이상, 선거운동 기간을 5일 이상, 투표일을 5일 이하로 하여 선거 일정을 정한다.
- ④ 그 외의 구체적인 선거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7조 【선거 공고】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를 명시한 선거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선거 일정
2. 제39조제2항의 후보 등록 마감 일정
3. 제39조제1항의 후보 등록에 필요한 서류·파일 종류
4.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의 명단

제2절 추천 및 후보등록

제38조 【추천】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및 해당 후보자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본부원은 추천 및 등록 기간 내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추천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기간 1일 전에 추천 서식을 배포한다.
- ③ 추천 서식에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 ④ 제1항의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은,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가 회원 1명과 1대1로 추천을 받기 위해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설명을 하는 행위만을 의미한다. 이를 위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제39조 【후보 등록 신청】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에 등록하려는 조는 다음 각 호를 등록 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 등록 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에 따름)
 2. 회원 200명 이상의 추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서식에 따름)
 3. 학생회장 후보자와 부학생회장 후보자의 재학 또는 재적증명서 각 1부
 4. 학생회장 후보자와 부학생회장 후보자의 이력서 각 1부
 5. 선거운동본부장의 재학 또는 재적증명서 1부
 6. 프로필 사진 1장
 7. 핵심 선거공약, 슬로건, 선거운동본부명
 8. 제31조제2항에 따른 선거운동본부원 명단
- ② 등록 마감 시각은 추천 및 등록 기간 마지막 날 18시로 한다. 등록 마감 시각 이후에는 등록할 수 없다.
- ③ 제1항제7호의 핵심 선거공약은 최대 3개로 한다.

제40조 【후보 등록 심사】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제3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파일을 검토하고 제5조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이때 선거관리위원장은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4조제5항에 의한 피선거권 박탈 회원 명단과의 대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에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혹은 선거운동본부장이 참석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혹은 선거운동본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심사 결과 제39조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파일에 결함이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심사 결과 선거운동본부가 공과대학 내 학부/과/전공/반, 타 단과대학, 혹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와 제35조제1항의 공동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후보 등록을 보류 및 선거운동본부명, 슬로건, 로고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 【후보 등록】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심사 결과 제5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조의 등록을 불허할 수 있다.
- ② 후보 등록 불허는 오직 제1항의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이외의 경우 해당 조의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후보 등록을 허가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이 완료된 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기호를 부여한다.

제42조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 의무 소집】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제40조제1항의 회의에 이어서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 등록 결과와 선거시행세칙의 주요 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회의에서 게시물·유인물의 수량 제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범위 설정, 전

자투표의 시행여부를 비롯한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제43조 【후보자의 겸직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추천 및 등록 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직에서 사퇴하여야 한다.

1. 공과대학 학생회장 혹은 부학생회장
2.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
3.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혹은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권한대행
4. 산하기구·특별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퇴하고자 할 때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해당 기구에 사퇴 의사를 통지한 때 그 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44조 【후보자의 사퇴】

후보자가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직에서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후보자 두 명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다. 단,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는 사퇴할 수 없다.

제45조 【후보 등록 등의 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다음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입후보자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후보자의 이름, 소속 학부/과/전공/반 및 학번
2. 추천인 수
3.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후보자의 등록 학기 및 이력
4. 슬로건, 선거운동본부명
5. 프로필 사진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후보 자격이 박탈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46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이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일반적인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공과대학 학생회의 집행기구·산하기구·특별기구 및 학내 단체의 통상적인 활동
3. 학생들로 구성된 학내 자치단체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③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해당 후보 및 해당 후보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만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경위 파악 후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 명령 1회를 줄 수 있다.

제47조 【사전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전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에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나누어 주는 행위
3. 방송·신문·통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4.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등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5. 그 밖의 당선을 위한 각종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행위
2. 제38조의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

③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 각 호의 사전선거운동 행위를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제48조 【사후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기간 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에 관련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나누어 주는 행위
2.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 등의 집회를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3. 그 밖의 당선을 위한 각종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사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86조제1항의 투표 권유 행위
2. 기존에 게재되어 있던 현수막·포스터·온라인 게시물이 철거 혹은 삭제되지 않은 경우

③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 각 호의 사후선거운동 행위를 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제49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장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학교 외부의 장소. 단,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의결에 따른 공동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기숙사 건물 내부

② 선거운동본부복의 착용에 대해서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미 학교 내부에서 배포된 선거물품에 대해서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본 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어기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제5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관리위원장·부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2. 후보 등록 마감 시각에 공과대학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의 직에 있었거나, 현재 그 직에 있는 자
3. 후보 등록 마감 시각에 공과대학 학생회 산하기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에 있었거나,

현재 그 직에 있는 자

4. 공과대학 학생회의 회원이 아닌 자

② 선거관리위원장·부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은 해임·탄핵되거나 사임하여도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후보자의 선거운동 행위에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경위 파악 후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제51조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유세

2. 간담회 참가

3. 선전물(대자보, 현수막, 유인물, 정책자료집)의 게시·배포

4. 학내 언론단체 주최의 토론회·인터뷰 참가

5.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의 구성 및 운영

6. 선거운동본부복의 착용

7. 그 밖의 당선을 위한 각종 행위

제52조 【유세】

① 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본부원들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벌이는 강의실 유세, 선거 물품 배포 등 모든 종류의 선전활동을 말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민주성·대중성 향상을 위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의 유세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단, 지나친 소음 등으로 학우들의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초래한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유세와 관련된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2조의2 【선거물품】

① 선거물품이란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마이크, 앰프, 확성기 등의 음향기기 및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선거운동본부가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모든 물건을 일컫는다.

② 선거운동에 활용되는 음향기기는 건물 외부에서만 허용된다. 단, 강의실 내 음향설비는 사용할 수 있다.

③ 각 선거운동본부는 유권자에게 배포하고자 하는 선거물품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디자인, 규격, 수량, 제작 및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제56조에 해당하는 유인물은 제외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제3항에 해당하는 선거물품 디자인, 규격, 수량, 제작 및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 승인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물품을 유권자에게 배포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제53조 【간담회】

- ① 간담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다.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간담회를 개최한다.
- ② 후보자는 간담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간담회 시작 시각 10분 전까지 간담회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선거운동본부가 간담회장에 10분 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 ③ 간담회는 후보자의 소견발표, 학내 언론사 및 참석자의 질의와 후보자의 응답으로 구성된다.
- ④ 간담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 중 일부를 선별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⑤ 간담회의 진행은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진행을 위임한 선거관리위원이 맡는다.
-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간담회의 속기록을 작성하여 간담회 종료 후 3일 내에 대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 【게시물·유인물·인터넷 선거운동의 제한】

- ① 게시물·유인물이 제55조 및 제56조의 규격에 맞지 않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게시물·유인물의 게시·배포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줄 수 있다.
- ② 선거 관련 게시물·유인물·인터넷 선거운동의 내용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배포 금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줄 수 있다.

제55조 【게시물의 수량 및 규격의 제한】

- ①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게시판에 A0 이하 크기의 대자보를 부착할 수 있다. 선거운동본부가 부착하는 대자보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모든 게시판에 부착하는 대자보를 합하여 100매가 넘을 수 없다.
- ② 선거운동본부는 가로 10m, 세로 1.1m 이하의 현수막을 4개까지 게시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대자보 수량 및 제2항의 현수막 수량을 어기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단, 수량은 게시되어 있는 수량을 말한다.

제56조 【유인물의 수량 및 규격의 제한】

-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4회 이내로 유인물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각 유인물의 종이 양면 면적의 총합은 A2 이내로 한다.
- ③ 유인물은 회당 4,000부 이내로 발행하여야 한다.
- ④ 유인물은 겉면에 “제00대 공과대학 학생회 선거 <선거운동본부명> 0차 리플렛”이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 ⑤ 제3항의 유인물 수량을 어기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제57조 【정책자료집】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두 조 이상일 경우 공동정책자료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 ② 정책자료집은 각 선거운동본부당 B5 크기 40쪽 이내로 제작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정하여 각 선거운동본부에 통보한다. 각 선거운동본부는 이 시각까지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 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은 선거운동본부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6시간 이상 초과하여 제출된 원고는 정책자료집에 수록할 수 없다.
- ⑤ 정책자료집의 제작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제58조 【인터넷에서의 선거운동】

-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②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범위는 제42조의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에서 결정한다.
- ③ 그 밖의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④ 선거운동본부가 결정 사항을 위반할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제59조 【선거운동본부복】

-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의 신상 정보,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상징물, 구호 등이 적힌 의상 1종을 선거운동본부복으로 하여 선거운동본부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복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상 1종의 디자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선거운동본부복에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착용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복을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용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제60조 【선거공영제】

- ① 각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금전이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본부당 10만 원 이상으로 선거공영자금을 결정해 각 선거운동본부에 균등 분배한다. 단, 선거운동기간 도중에 사퇴하거나 등록이 말소된 선거운동본부는 그 금액의 절반 이하를 지급하며 구체적인 액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4절 징계

제61조 【징계】

- ① 징계라 함은 선거시행세칙에 징계 사유로 명시한 행위를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행위를 할 때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두 개 이상의 징계를 줄 수 없다. 단, 하나의 행위가 여러 수위의 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부여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비고의성,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책, 혹은 그 이외의 선거관리위원회 전

체회의에서 의결한 경감 사유가 있을 경우, 유권해석을 통해 하위 징계를 부여할 수 있다.

제62조 【징계의 종류】

- ①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뉜다.
- ② 시정명령이 3회 누적되면 주의 1회를 받은 것으로 한다. 시정명령 3회가 주의 1회로 전환되면, 해당 시정명령 3회는 소멸한다.
- ③ 주의가 2회 누적되면 경고 1회를 받은 것으로 한다. 주의 2회가 경고 1회로 전환되면,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
- ④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 ⑤ 경고가 3회 누적된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추가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 학생회장·부학생회장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제63조 【시정명령】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을 줄 수 있다.

1. 제25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제31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원의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3. 제31조제5항의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한 때
4. 제32조제4항의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신청에 결함이 있을 때
5. 제46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때
6. 제54조제1항의 게시물·선전물의 사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규격이 맞지 않을 때
7. 제67조제4항의 이의제기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8. 그 외 선거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선거시행세칙 및 규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할 때

제64조 【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를 줄 수 있다.

1.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4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2. 시정명령을 세 번 받았을 때 (이때 주의로 전환된 해당 시정명령 3회는 소멸한다.)
3. 제22조의2제2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
4. 제25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제31조제6항의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한 때
6. 제38조제4항의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으로 허용되지 않을 활동을 할 때
7. 제40조제2항의 회의에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및 본부장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
8. 제40조제3항의 후보 등록 신청 시 제출한 서류·파일에 결함이 있을 때
9. 제47조제3항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
10. 제48조제3항의 사후선거운동을 할 때
11. 제49조제4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12. 제50조제4항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13. 제52조의2제5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 물품을 유권자에게 배포할 때
14. 제53조제2항의 간담회 시작 10분 전까지 후보자가 간담회장에 도착하지 않을 때
15. 제55조제3항의 대자보의 부착 장소, 현수막의 게시 장소, 게시 수량을 어길 때
16. 제56조제5항의 유인물 발행 수량을 어길 때
17. 제57조제3항의 정책자료집 원고 마감 시각을 지키지 않을 때
18. 제58조제4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공간 이외의 인터넷 공간에서 논쟁·답변 등의 의사표현 행위를 할 때
19. 제59조제4항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선거운동본부복을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원 등이 착용할 때
20. 제95조제3항의 선거운동본부장 혹은 대리인이 개표장에 참석하지 않을 때
21.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해치는 것이 분명한 때

제65조 【경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를 줄 수 있다.

1. 주의를 받은 후에도 해당 선거운동본부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24시간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
2. 한 선거운동본부에 주의가 2회 누적될 때 (이때 경고로 전환된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
3. 제35조제3항의 후보 등록이 완료된 선거운동본부가 공과대학 내 학부/과/전공/반, 타 단과대학, 혹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와 공동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였을 때
4. 제54조제2항의 게시물·유인물의 사전 허가를 위한 회의 결과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5. 제81조제4항의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때
6. 특정 후보자의 당락이나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및 본부원, 참관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때
7. 선거에 관하여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본부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할 때
8.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때
9. 정당한 사유 없이 게시물·현수막 그 밖의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할 때
10.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11.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12.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한 때

② 경고를 주었을 시, 선거관리위원장은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명과 징계 사유를 포함한 대자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게시판 및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6조 【징계의 의결·취소】

- ① 징계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 ② 징계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심의 요구가 있으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 ③ 징계 취소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제5절 이의제기

제67조 【이의제기의 방식】

- ①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후보자 및 본부장만 할 수 있다.
-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본부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 ③ 투표 및 개표와 관련해서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장이 구두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단, 이때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24시간 이내에 해당 이의제기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선거운동본부가 제1항에서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를 줄 수 있다.

제68조 【이의제기의 처리】

- ① 접수된 이의제기는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의결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단, 선거관리위원장의 승인이 있으면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의결 없이도 이의제기를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② 이의제기가 접수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체회의 이전까지 이의제기에 대한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 ③ 이의제기가 전체회의에 상정된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처리한다. 이의제기의 처리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절 투표

제69조 【투표방법】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의 투표는 기표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원들의 쉬운 투표 참여 혹은 부재자의 투표 참여를 위하여 우편, 온라인, 모바일 그 밖의 특수한 투표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특수한 투표방법의 시행 여부, 대상, 방식, 운영 등에 관하여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 【전자투표】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솔루션을 이용해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 ② 전자투표의 투표 페이지는 오프라인 투표에서 사용된 투표용지의 항목들을 동일하게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전자투표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하며 선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비밀투표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익명화 및 암호화하여야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투표 시간에 맞추어 온라인 솔루션을 실행하여야 한다.
- ⑤ 전자투표 이용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 수단을 거쳐 서비스에 접속한 뒤 각 선거운동본부의 핵심 선거공약, 징계사항과 사진 등을 확인하고 투표한다.

제71조 【투표관리요원】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의 투표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투표소별로 투표관리요원을 한 명 이상 배치하여 투표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본부에서 파견된 투표관리요원이 투표소에 배치된 경우 그 투표소에는 두 명 이상의 투표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③ 투표관리요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투표 행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 투표 참여 호소, 선거와 관련되지 않은 내용을 제외한 발언을 할 수 없다.
- ④ 공과대학 학생회 집행위원회, 각 학부/과/전공/반 학생회,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요원의 파견을 요청하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2조 【투표일·투표시간】

- ① 투표는 5일 이내로 진행한다.
- ② 투표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특정 투표소 및 전자투표의 투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3조 【투표소】

- ① 투표소의 위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편성하여 의결한다.
- ② 투표소 1개당 투표함 1개를 비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 및 그 밖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 ④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 ⑤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3조의2 【투표소 게시물】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여야 한다.
 1. 각 선거운동본부의 사진
 2. 공동정책자료집
 3. 각 선거운동본부의 징계사항 목록
- ② 징계사항 목록에는 징계 사유가 병기되어야 하며, 하위 징계가 누적되어 상위 징계가 부여된 경우 하위 징계의 부여 사유를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
- ③ 투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것을 제외한 게시물은 부착할 수 없다.

제74조 【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에는 해당하는 선거의 명칭, 학생회장 후보자 및 부학생회장 후보자의 성명 및 소속 학부/과/전공/반, 학번, 선거운동본부명, 선거운동본부의 슬로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용지상 게재 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 ③ 해당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한 조일 경우 투표용지에는 “찬성”, “반대” 란을 두어야 한다.
- ④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있어야 한다.

제75조 【투표용지의 송부】

- ①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74조에 따라 제작하여 각 투표일 9시까지 각 투표소로 송부한다.
- ② 투표시간 중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필요할 때는 해당 투표소를 관리·감독하는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갈 수 있다.

제76조 【투표절차】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선거인명부 검색
2. 투표관리요원이 투표자의 신분증과 투표자 본인, 선거인명부상 신원이 일치하는지 확인
3. 투표자 본인이 선거인명부의 본인 이름 옆에 서명
4. 투표관리요원의 투표용지 확인
5. 투표용지 배부
6. 기표 및 투표

제77조 【본인 확인】

-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선거인명부를 전자적으로 운영할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투표자의 신분증은 학생증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증이 없을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과 본인의 소속 및 학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 ③ 투표관리요원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 ④ 휴학생은 제2항에 규정된 신분증과 재적증명서를 제시한 후 투표할 수 있다. 이때 투표관리요원은 관련 내용을 별도로 기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선거인명부를 전자적으로 운영할 경우 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8조 【투표용지 배부】

- ① 투표관리요원은 투표용지의 인쇄 상태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확인한 후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배부한다.
- ②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79조 【기표·투표】

- 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후보 1개 조를 선택하여 투표

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80조 【투표참관인】

① 투표참관인은 각 선거운동본부가 투표 진행을 감독하기 위해 각 투표소에 배치한 자를 말한다.

②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참관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투표참관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1조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

① 투표참관인은 선거운동본부장을 통해 투표 상황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해당 투표소의 투표 진행을 중지한다.

③ 투표참관인을 파견한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없다.

④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참관인이 속한 선거운동본부에 경고 1회를 줄 수 있다.

제82조 【투표참관인의 부정 행위】

①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투표 방해 행위 및 소란 행위
2. 특정 후보·선거운동본부의 선전 물품 소지 및 선전 발언 등 선거운동 행위
3.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
4.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행위로 인정한 행위

②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서 공과대학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에 반하는 부정행위를 할 때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요원은 해당 투표참관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투표참관인이 속한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종료 시까지 해당 투표소에 투표참관인을 파견할 수 없다.

제83조 【투표소에서의 질서유지】

투표관리요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투표소에서의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4조 【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선거운동본부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투표 마감 시각까지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제85조 【투표함 확인 및 보관】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함,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을 인수하여 지체 없이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 ② 각 투표소의 투표함은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회실에 보관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실이 투표함의 보관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의 합의로 투표함 보관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86조 【투표 권유 행위】

- ①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는 선거관리위원의 감독 하에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투표 권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② 제1항의 투표를 권유하는 행위에 소속 선거운동본부로의 투표를 유도하는 내용은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사후선거운동으로 판단하여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제87조 【연장투표】

투표 기간 내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회에 한하여 연장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연장투표의 기간은 본투표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2회 이상 실시할 수 없다.

제7절 투표 성립

제88조 【투표 성립 요건】

- ①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는 가투표수가 총 유권자 수의 과반수일 때에 성립한다.
- ②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73조제6항에 의하여, 투표가 성립한 경우에만 개표를 진행할 수 있다.
-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가투표수를 확정 후 투표 성립 여부를 공고한다.

제8절 개표

제89조 【정의】

개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

1. 유권자: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투표권이 있는 사람
2. 총 유권자 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수
3. 이중투표: 유권자가 복수의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고,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여러 번 투표하는 행위
4. 이중투표수: 각 투표소의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수의 합에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유권자의 수를 뺀 수 (예를 들어, 유권자 5명의 서명이 13번 발견될 경우 이 유권자 5명에 대한 이중투표수는 8이다.)
5. 대리투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투표하는 부정행위

6. 대리투표수: 적발된 대리투표 사례의 수
7. 부정투표: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하는 부정행위
8. 부정투표수: 적발된 부정투표 사례의 수
9. 가투표수: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의 수
10. 가투표율: 가투표수를 총 유권자 수로 나눈 비율 (“(가투표수) / (총 유권자 수)”)
11. 투표소별 가투표수: 각 투표소에서 이중투표, 대리투표, 부정투표가 아닌 정당한 투표를 진행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사람의 수
12. 실투표수: 개표 시 각 투표함에서 실제로 나온 투표용지의 수의 합
13. 실투표율: 실투표수를 총 유권자 수로 나눈 비율 (“(실투표수) / (총 유권자 수)”)
14. 투표소별 실투표수: 각 투표소에 해당하는 투표함에서 실제로 나온 투표용지의 수
15. 무효표: 제9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표
16. 기권표: 아무 기표도 되어있지 않은 표
17. 투표소별 오차: 각 투표소의 투표소별 가투표수와 투표소별 실투표수의 차의 절댓값 (“|(투표소별 가투표수) - (투표소별 실투표수)|”)
18. 오차: 모든 투표소의 투표소별 오차와 이중투표수, 대리투표수, 부정투표수의 합
19. 표차: 각 선거운동본부가 획득한 표수의 차

제90조 【투표용지의 무효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없는 것
3. 2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한 것
4. 어느 기표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
5.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기표용구 이외의 용구 혹은 필기구로 기표하거나 표시한 것
6. 기표 이외의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한 것의 일부분이 표시되거나 기표한 것 내부가 메워진 것으로서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후보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3. 두 후보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91조 【개표관리】

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만이 할 수 있다.

② 개표장에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상태에서만 개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92조 【개표장】

① 개표장은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이전에 개표장의 위치와 개표 시작 시각을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93조 【개표절차】

- ① 개표는 투표소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 ② 개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가투표수 확인 및 투표 성립 여부 공고
 2. 각 투표소별 투표함 개봉 및 개표
 3.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4. 후보별 득표를 묶음별로 분류하여 투표함에 재투입
 5. 선거관리위원장의 해당 투표소의 각 후보별 득표 공고 및 현황판에 결과 기재
 6. 제2호부터 제5호의 과정을 투표소별로 반복
 7. 제69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표를 시행할 때 그 투표의 결과 확인 및 공고
 8. 최종 결과 발표

제94조 【표의 해석】

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95조 【선거운동본부장의 개표장 출석 의무】

- ①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장은 개표 시작 시각 30분 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개표장에 있어야 한다.
- ②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거운동본부장은 선거운동본부원 1인을 대리인으로 파견할 수 있다.
- ③ 선거운동본부장 또는 대리인이 개표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줄 수 있다.

제96조 【개표참관인】

-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개표 시작 시각 전까지 개표참관인 한 명을 선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개표참관인은 개표 시작 시각 30분 전까지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 ③ 개표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하고, 득표를 검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④ 개표참관인의 교체는 선거관리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제97조 【개표장에서의 질서 유지】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시행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람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8조 【투표용지·선거인명부 등의 보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선거인명부 등을 개표 결과 공고 후 72시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99조 【개표 결과】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완료되는 즉시 실투표수, 각 선거운동본부의 득표수, 기권표의 수, 무효표의 수를 확정한다.
- ② 개표 결과는 가투표수, 실투표수, 각 선거운동본부의 득표수, 기권표의 수, 무효표의 수, 오차로 구성된다.

제9절 당선

제100조 【당선의 기준】

- ① 개표 결과 최다득표한 조를 당선 조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일 때는 당선 조를 확정할 수 없으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에 따라 재투표·결선투표·보궐선거를 시행한다.
 1. 최다득표 조가 두 조 이상인 경우
 2. 최다득표 조와의 표차가 오차의 2배 이하인 조가 있는 경우
 3. 후보가 한 조이면서 “찬성” 표의 수와 “반대” 표 수의 차가 오차의 2배 이하인 경우
 4. 후보가 한 조이면서 “찬성” 표의 수가 실투표수의 과반이 아닌 경우

제101조 【당선공고】

- ①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공고한 때로부터 72시간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 ②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단, 이의신청이 당선자 및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중대한 선거시행세칙 위반과 관련된 경우 제101조의2를 따른다.
- ③ 개표 결과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확정을 공고한다. 공고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과대학 학생회장·부학생회장 당선자의 이름, 소속 학부/과/전공/반, 학번
 2. 공과대학 학생회장·부학생회장 당선자의 선거운동본부명
 3. 최종 투표율
 4. 투표 결과 (각 선거운동본부의 투표소별 득표수, 총 득표수, 득표율을 포함한다)

제101조의2 【당선취소】

- ① 개표 결과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당선자 및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중대한 선거시행세칙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공고하고, 당선자의 당선취소 여부를 논의한다.
- ② 당선취소는 선거관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한다.

제10절 재투표, 결선투표 및 보궐선거

제102조 【재투표】

-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재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한

다.

1. 후보가 한 조이면서 “찬성” 표의 수와 “반대” 표의 수의 차가 오차의 2배 이하인 경우
 2. 투표함을 분실한 경우
 3. 선거인명부를 분실한 경우
 4. 개표 전에 투표함을 개봉한 경우
 5.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만큼 중대한 관리상의 잘못이 발생한 경우
 6. 전자투표 시행 시 해킹 등의 공격으로 인한 데이터의 유출 및 유실이 발생한 경우
 7. 당선된 선거운동본부가 제101조의2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8. 오차가 가투표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
- ② 재투표가 결정된 경우 이전 투표 결과는 무효화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 실시 사실 및 경위를 공고해야 한다.

제103조 【결선투표】

- ① 최다득표 조가 두 조 이상인 때는 최다득표를 기록한 모든 조를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 ② 1위 득표 조와의 득표 차이가 오차의 2배 이하인 조가 있을 때는 1위 득표 조와 해당 조들을 후보로 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한다.
- ③ 결선투표는 개표 종료 후 일주일 안에 3일에 걸쳐 선거운동 없이 시행하며, 투표율에 상관없이 득표수가 많은 조를 당선 조로 한다.

제104조 【보궐선거】

- ①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과대학 학생회칙 제74조에 의거,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장투표에서도 투표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2. 후보가 한 조이면서 “찬성” 표의 수가 실투표수의 과반이 아닌 경우
 3. 등록된 후보가 없는 경우
 4. 모든 후보가 사퇴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
- ② 보궐선거의 일정은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절 선거 정리 사업

제105조 【공동선거평가단】

- ① 공동선거평가단은 선거에 대한 실무적인 평가와, 선거 과정에서 생산된 의제의 평가 및 정리를 위한 기구이다.
- ② 공동선거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의해 구성되며,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
 2. 각 선거운동본부장
 3. 선거관리위원
 4.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③ 공동선거평가단의 의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평가

2. 이후 공과대학 학생회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공동의 과제들
3. 선거 과정에서 부각된 의제에 대한 논의
4. 낙선 선거운동본부의 정책 및 집행 가능성
- ④ 공동선거평가단은 투표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첫 모임을 소집한다.
- ⑤ 공동선거평가단은 공과대학 학생회 또는 공과대학 학부/과/전공/반 대표 연석회의와의 공동 주최로 대중 평가회를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대중 평가회는 대자보 등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일정을 공고하고, 그 결과는 대중에게 공개한다.
- ⑥ 공동선거평가단의 회의 또는 대중 평가회에 불참한 선거운동본부는 대자보를 통해 공고한다.

제5장 선거시행규칙

제106조 【선거시행규칙】

선거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선거시행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선거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7조 【제정·개정·폐지】

- ①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한다.
 1.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의 발의
 2. 선거관리위원의 발의
 3. 선거운동본부장 연석회의의 발의
- ② 각 선거시행규칙의 제정·개정·폐지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소된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선거시행규칙은 모두 폐지된다.

부칙

제1조 【적용 및 전례의 인정】

본 선거시행세칙은 제31대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선거부터 적용한다. 단, 구 세칙에 따라 본 선거시행세칙 공포 이전에 이뤄진 행위는 이를 인정하며, 유권해석 시 전례로 활용할 수 있다.

제2조 【개정 후 적용】

선거시행세칙의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개정안 공포 후 48시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한다.